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구축 방안 연구: 강원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전 예 지

국문요약

디지털성범죄는 피해 영상물의 완전한 삭제가 어려워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사회적 고통이 오랜기간 지속된다는 특성을 가진다. 본 연구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도내 여성폭력 대응 기관 종사자 11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피해자는 유포 불안이 높고 삭제지원에 관한 욕구가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면접에 참여한 현장 전문가들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유관기관 연계 부족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한편, 넓은 면적으로 인한 서비스 접근성 저하와 지역 내 익명성 보호의 어려움은 피해지원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지역적 특성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도내에서 디지털성범죄의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지역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상담방식의 다양화, 예방 및 피해 대응에 관한 교육 강화를 제안하였다.

주제어: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지역적 특성, 강원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특화 상담소, 삭제지원

I. 서론

2018년 'n번방 사건'과 '박사방 사건'에 이어 2025년 '목사방 사건'¹⁾이 발생하면서 디지털성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해결이 시급한 사회문제로 다루어졌다. 디지털성범죄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한 후 이들이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도록 협박하고, 그 영상물을 텔레그램 방에서 돈을 받고 유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디지털성범죄는 피해 영상물이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피해자의 다수가 10대 여성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덧붙여,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

* 본 연구는 "강원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통합대응체계 구축방안 연구" 보고서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이다.

1) 자료: 최동순. (2025. 2. 12). 10대 피해자만 159명... 성착취 '목사방' 우두머리 김녹완 구속기소. 한국일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48631?sid=102>) 2025년 3월 2일 접속.

렵고, 대다수 피해자가 영상물이 유포되고 1년 이상 지난 후에야 자기 모습이 담긴 영상물이 공유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점²⁾에서 강간, 성추행 등 전통적 개념의 성범죄와는 다른 양상을 띤다. 온라인을 통해 피해 영상물이 확산되면, 완전한 삭제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측면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은 장기화된다.

정부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고자 2018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1차 여성폭력방지 정책 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피해 영상물 삭제 특화기관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립으로 이어졌고, 2021년부터 여성가족부는 지역 단위에서 피해자를 밀착 지원할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 특화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4년간 특화 상담소는 전국에 순차적으로 설립되었고, 2025년 1월에 강원특별자치도를 마지막으로 모든 지역에 디지털성범죄 전문 대응체계가 갖추어졌다.³⁾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정책뿐만 아니라 학술적 연구에서도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크게 네 가지 흐름을 보인다. 첫 번째로 디지털성범죄의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지원을 논의한 연구이다(권미경, 2018; 김미선, 2020; 김호겸, 2023; 김희정, 박광민, 2020; 선은애, 2020; 오삼광, 2023; 이종현, 강동욱, 2021; 정도희, 2021; 정완, 2021; 최용성, 광대훈, 2020; 한성훈, 2020; 홍남희, 2018). 이 연구들은 선행 연구, 관련 정책, 판결문 등을 바탕으로 기존 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디지털성범죄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논의하였으므로 피해자와 현장 종사자의 경험을 면밀히 살펴보지 못하였다.

두 번째는 청소년의 디지털성범죄 피해 사례를 조사한 연구이다(김경희 외, 2020; 이혜정 외, 2022). 이 연구들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디지털 미디어 공간에서 성범죄에 쉽게 노출되지만, 자신이 피해자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디지털성범죄 청소년 가해자의 경험을 탐구한 연구(박은하, 2023)도 진행되었다. 이 연구들은 디지털성범죄 가해자 혹은 피해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청소년들의 경험을 조사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나, 피해자를 지원하는 종사자의 경험을 논의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세 번째로 현장 전문가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경험을 관찰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박찬미, 2021; 이정숙, 신현주, 2023; 전해경, 2023; 최혜정, 2024). 이 연구들(박찬미, 2021; 전해경, 2023)은 심층면접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욕구 및 회복 과정, 현 제도의 한계를 깊이 있게 조사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디지털성범죄 전문 상담원을 대상으로 소진 경험을 살펴본 연구(이정숙, 신현주, 2023)와 사회복지사, 연구원, 인권 관련 전문가, 변호사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법을 논의한 연구(최혜정, 2024)도 진행되었다. 이 연구들은 피해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종사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을 상세히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의 현황과 대응 방안을 제시한 연구가 이루어

2) 자료: 김소영. 2025. 2. 23. 길에서 눈 마주치면 ‘저 사람도...’ 피해자는 두렵다[N번방 너머의 이야기]. 동아일보(<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223/131081689/1>) 2025년 3월 10일 접속.

3) 서울과 경기도는 정부의 지원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기관을 운영한다(신보라, 2024).

어졌다(심선희 외, 2023; 이연화, 양금선, 2024; 정다운, 이은지, 2020). 이 연구들은 디지털성범죄 대응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계 체계와 지원의 한계를 조사하였다. 일부 연구는 현장 전문가뿐만 아니라 피해자(이연화, 양금선, 2024; 정다운, 이은지, 2020)와 양육자(이연화, 양금선, 2024)를 조사대상으로 포함하여 디지털성범죄 경험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들은 디지털성범죄를 다양한 관점에서 조망하였으나, 피해지원 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지역적 특성에 관해서는 논의하지 못하였다.

디지털성범죄는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으나 지역별로 대응체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지역 내에 피해지원을 제공하는 전문가나 기관이 부재하면 피해자가 충분히 지원받기 어렵고, 이는 일상 회복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2021년부터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기관들이 설립되었으나, 2024년까지 강원특별자치도는 관련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에 큰 공백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여겨지는 이유는 여성폭력 대응 기관들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했기 때문이다. 이 기관들은 그동안 도내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였으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인 체계 구축의 필요성은 관련 연구(송사리, 김지연, 2022)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면적이 크고 일부 지역은 여성폭력 피해지원 기관이 부재하므로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까지 관련 연구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1) 디지털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전문적인 대응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던 강원특별자치도는 그동안 어떻게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였는가?, 2) 피해지원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성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내 여성폭력 관련 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하였는지,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는데 어떠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지 등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자 한다. 심층면접을 통해 도출된 연구의 결과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밀착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지역적 특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배경

1. 디지털성범죄 개념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보편화됨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보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이는 사람들의 일상에 가치 있는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컴퓨터, 스마트폰 등 디지털 장치가 여성폭력의 도구로 활용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가 발생하였다. 성별에 따른 폭력행위(gender-based violence) 중 기술에 기반한 학대(technology-facilitated abuse)를 일

컬어 디지털성범죄라 정의한다(강은영, 2020; Jun, W. C., 2023). 디지털성범죄라는 용어는 디지털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 온라인 성폭력과 혼용되었으나, 2017년 9월 26일 여성가족부와 15개 기관이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성범죄(몰래 카메라 등)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온·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포괄하는 용어로 활용되었다(김희정, 박광민, 2020).

디지털성범죄는 카메라 등 매체로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해당 영상물을 유포, 유포 협박, 저장, 전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 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 언어폭력을 하거나, 이미지를 전송하는 등 성적 괴롭힘을 가하는 행위,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도 디지털성범죄에 해당한다(남재성, 2019).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4)은 디지털성범죄의 유형을 여섯 가지로 구분한다. 첫 번째는 불법촬영이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규정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가 이에 해당한다. 여기서 불법촬영이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허락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찍거나 성적 행위를 촬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유포·재유포이며, 촬영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촬영물을 인터넷, SNS, 메신저 등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뜻한다. 피해 영상물이 유포된 후에는 삭제가 어렵고, 언제든지 다시 온라인에서 퍼져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낙인을 초래한다.

세 번째는 유포 협박이며, 촬영된 영상물을 공개하겠다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특정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뜻한다. 유포 협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1항 제3호와 관련된다. 피해자에게 성행위 및 추가촬영 등을 강요하며, 이러한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피해 영상물을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는 행동 등을 유포 협박의 예로 들 수 있다.

네 번째는 합성 제작 및 유포이며, 기존 영상이나 이미지를 변형하여 성적 내용을 추가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이 유형의 범죄는 주로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형태로 발생한다. 합성 제작 및 유포의 대표적인 예로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활용한 범죄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다른 사람의 얼굴 혹은 음성 등을 합성하여 허위 영상을 제작하는 행위와 관련된다. 합성 제작 및 유포에 관한 세부사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서 규정한다.

다섯 번째로 소지·구입·저장은 불법촬영물이나 유포된 성적 영상물을 개인이 소유하거나 저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제작하는데 가담하지 않더라도 영상물을 구입하거나 소유한 경우, 디지털성범죄의 확산을 방조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은 온라인 환경에서 성적 언어나 행동을 통해 타인을 괴롭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유형의 범죄는 주로 소셜미디어, 메신저, 온라인 게임, 포털 사이트 등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진다. 성적인 발언, 음란한 이미지나 동영상의 강제 전송, 성적 목적의 불쾌한 메시지나 사진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신상 정보 등을 공개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등은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의 예에 해당한다.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와 제311조(모욕)에서 규정한다.

앞서 살펴본 디지털성범죄 피해 유형 중 2022년(30.1%)과 2023년(31.3%)에 가장 많이 발생한 유형은 유포협박이었다(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10대와 2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 피해자의 비율이 남성 피해자의 비율보다 높았다(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4). 한편, 청소년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동시에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관련 연구들(정도희, 2021; Jun, W. C., 2023)은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디지털성범죄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온라인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피해 영상물이 빠르게 퍼져나가는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으로 인하여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경험하는 고통이 심각하다는 점(Jun, W. C., 2023)에서 볼 때, 다양한 피해 유형을 아우를 수 있는 피해지원 체계의 구축은 필수적이다.

2.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체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은 중앙기관에 해당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각 지역에 설립된 디지털성범죄 특화 상담소로 분류된다.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은 디지털성범죄 특화 상담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피해지원 기관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디지털성범죄 특화 상담소를 중심으로 피해지원 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018년 4월 30일에 설립되었으며, 이 기관은 상담지원, 삭제지원, 연계지원을 제공한다(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4).

먼저, 상담지원은 위기 상담과 삭제지원 접수 및 상담, 피해자 지원 안내를 포함한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 영상물의 삭제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므로 상담지원은 주로 삭제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삭제지원에는 피해 영상물 삭제, 유포 현황 모니터링, 삭제 결과 보고서 제공이 포함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2에 따른 불법 촬영물 혹은 합성·편집물, 비동의 유포물에 해당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온라인에 유포되거나 유포가 의심되는 경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해당 영상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삭제지원을 제공한다. 영상물이 유포된 피해자는 삭제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유포 여부가 불확실한 피해자에게는 유포 현황에 관한 모니터링 지원이 제공된다. 여기서 유포현황 모니터링이란 피해 영상물에 대한 구체적인 URL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유포가 의심되는 경우, 키워드 검색이나 센터 내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피해 촬영물의 유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선제적으로 삭제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연계지원은 경찰청, 병원, 법원, 디지털성범죄 특화 상담소 등과 협력하여 피해자에게 필요한 수사, 법률, 의료 및 치료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통칭한다. 이와 더불어 수사 과정 모니터링과 채증 자료 제공 등의 지원이 연계지원에 포함된다.

2) 디지털성범죄 특화 상담소

여성가족부는 지역사회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021년부터 디지털성범죄 특화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2). 디지털성범죄 특화 상담소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5조(피해자 보호·지원)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에 따라 피해자에게 심층 상담, 수사 동행, 의료지원 등 1:1 밀착형 서비스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역할이 피해 영상물 삭제지원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면, 디지털성범죄 특화 상담소의 역할은 이러한 영상물의 유포 혹은 그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피해자에게 상담, 수사, 법률, 의료 등 밀착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가령 피해자의 영상물이 유포된 경우, 특화 상담소의 전문 상담원은 피해자에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해당 영상물(파일, 폴더 등)을 전달하도록 안내한다.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피해 영상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삭제지원을 제공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퍼져나간 피해 영상물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은 어렵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경험하는 고통은 오랜 시간 지속될 수 있다. 디지털성범죄 특화 상담소는 지역사회에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조력자로서 역할을 한다.

2025년 1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설립된 특화 상담소를 끝으로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디지털성범죄 특화 상담소(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기관 포함)가 운영되고 있다(〈표 1〉 참고). 2024년까지 특화 상담소가 부재하였던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여성폭력 대응 기관들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였다. 도내에 있는 여성급전화1366,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폭력피해 이주여성쉼터, 이

4) 특화 상담소의 전문 상담원이 피해자에게 영상물을 받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보안 체계의 미흡 등으로 인하여) 영상물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문 상담원은 피해자가 직접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영상을 전달하도록 안내하는 방식으로 삭제지원을 연계한다.

주여성상담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여 특화 상담소의 부재로 인한 공백을 메운 것이다.

〈표 1〉 지역별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기관

	지역명	기관명
1	서울특별시	서울시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2	경기도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스톱지원센터
3	인천광역시	인천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센터
4	부산광역시	부산시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디지털성범죄피해대응센터
5	대구광역시	(사)대구여성의전화 부설 디지털성범죄특화상담소
6	광주광역시	광주YWCA가정상담센터
7	대전광역시	대전YWCA통합상담소
8	울산광역시	동구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9	세종특별자치시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10	충청북도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11	충청남도	아산 해뜰통합상담소
12	전북특별자치도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
13	전라남도	(사)행복누리-목포여성상담센터
14	경상북도	(사)포항여성회 경북권역 디지털성범죄특화상담소
15	경상남도	(사)경남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16	제주특별자치도	(사)제주YWCA디지털성범죄상담소
17	강원특별자치도	원주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자료: 신보라. (2024). 일부 내용 발췌

3. 디지털성범죄 관련 선행연구 검토

디지털성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진행된 연구는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지원 제도, 청소년의 피해 및 가해 사례, 현장 전문가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경험에 초점을 맞추었다. 첫 번째로 디지털성범죄의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연구(권미경, 2018; 김미선, 2020; 김호경, 2023; 김희정, 박광민, 2020; 선은애, 2020; 오삼광, 2023; 이종현, 강동욱, 2021; 정도희, 2021; 정완, 2021; 최용성, 곽대훈, 2020; 한성훈, 2020; 홍남희, 2018)들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대다수가 여성임을 강조하며, 관련 법과 제도가 가지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들은 디지털성범죄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을 강화하고, 피해 접수 창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현 제도의 개선 방안으로 해외 플랫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어야 삭제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로 청소년의 디지털성범죄 피해 사례를 고찰할 연구들(김경희 외, 2020; 이해정 외, 2022)이 이루어졌다. 이 연구들은 청소년 피해자들이 디지털 미디어 공간에서 성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남성중심적 섹슈얼리티 질서에서 신음소리나 성기사진 등에 대한 성적 요구나 협박을 받았

을 때 이것을 성범죄로 인식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박은하(2023)의 연구에서는 남학생들 사이에서 성적 표현물이 유희적으로 소비되고 있으며, 청소년 디지털성범죄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임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호기심, 돈벌이, 모방, 협박 등을 계기로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그런데 청소년들의 디지털성범죄를 부모가 알게 되었을 때 이를 은폐하려 하였고, 그 결과 가해 청소년들은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자기 잘못을 누우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와 양육자의 사례를 조사한 연구(이연화, 양금선, 2024)에서는 피해자들이 SNS 메신저에서 모르는 사람이 보낸 링크를 내려받은 후 핸드폰이 해킹되었고, 돈을 주지 않으면 전화번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 영상물(딥페이크 영상 포함)을 보낸다고 협박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청소년이 어떠한 경로로 디지털성범죄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되는지 개인의 경험을 통해 깊이 있게 관찰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세 번째로 디지털성범죄 대응 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피해지원 경험을 탐구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박미란 외, 2023; 이정숙, 신현주, 2023; 전해경, 2023; 최혜정, 2024;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3). 이 연구들은 피해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삭제지원이라 강조하였다. 대다수 피해자는 피해 영상물의 완전한 삭제가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상담 초기에는 삭제지원을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박찬미, 2021). 같은 맥락에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3)은 피해 영상물의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에 대한 피해자의 만족도가 가장 높다고 밝혔다. 이미 유포된 피해 영상물의 확산은 디지털성범죄 가해자를 검거하더라도 막기 어렵지만(최혜정, 2024), 삭제지원은 피해자가 느끼는 만족감이 높다는 측면에서 피해자의 일상회복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도내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한 경험이 있는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조사는 양적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없는 다양한 경험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연구방법이다. 관련 연구들(박은하, 2023; 박찬미, 2021; 이정숙, 신현주, 2023; 전해경, 2023; 정혜원 외, 2024)은 피해자 중심의 디지털성범죄 지원 체계를 모색하기 위하여 이 방법을 활용하였다. 면접조사를 실시하면,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성에서 비롯된 복잡한 맥락들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강원형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연구 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1. 참여자 선정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여성폭력 관련 기관 종사자를 면접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면

접조사가 이루어졌던 2024년에는 강원특별자치도에 디지털성범죄 특화 상담소가 부재하였으므로 여성폭력 대응 기관 종사자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였다. 따라서 도내 여성폭력 관련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경험을 조사하였다.

면접 대상자는 목적 표집(purposive sampling) 방법으로 선정하였다. 목적 표집은 비확률 표집 방법 중 하나로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례나 경험을 가진 대상을 의도적으로 선정하는 방법이다(Rai & Thapa, 2015). 이 방법은 특정 현상이나 환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질적연구에서 활용하는 표집 방법으로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표본을 선택하는 양적연구의 확률 표집 방법과 차이가 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경험을 고찰한 연구(박찬미, 2021; 이정숙, 신현주, 2023)에서도 특정 경험을 가진 대상자로부터 주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이 표집 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내에 위치한 여성긴급전화1366, 가정폭력·성폭력 통합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 여성폭력 피해 지원 기관 11개소에 근무하는 종사자 중 기관을 운영하거나, 피해지원을 제공하는 종사자 11명을 면접 대상으로 선정하였다(〈표 2〉 참고).

자료 수집은 대면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일대일 또는 4명 이하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심층면접 전에 연구 목적과 절차를 충분히 안내하고,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조사 내용을 녹취하였다. 심층면접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기관명, 직위, 경력, 연령 등의 정보는 생략하고, 면접 참여자에게 1~11의 고유번호를 부여하였으며 대략적인 기관의 유형과 근무 지역, 성별을 표시하였다. 심층면접은 평일 오후에 진행되었고, 면접 장소로 연구원 회의실 혹은 참여자의 근무지를 활용하였다. 면접조사는 2024년 10월부터 11월까지 1개월 동안 이루어졌으며, 회기 당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표 2〉 심층면접 참여자 일반적 특성

구분	면접 참여자	기관 유형	지역	성별
도내	면접 참여자 1	해바라기센터	영동	여
	면접 참여자 2	해바라기센터	영서	여
	면접 참여자 3	해바라기센터	영서	여
	면접 참여자 4	여성긴급전화1366	영서	여
	면접 참여자 5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영서	여
	면접 참여자 6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영서	남
	면접 참여자 7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영서	여
	면접 참여자 8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영동	여
	면접 참여자 9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영동	여
	면접 참여자 10	성폭력 상담소	영동	여
	면접 참여자 11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영동	여

2. 조사내용

면접조사에서는 반구조화된 면접(semi-structured interview) 질문을 활용하였다. 반구조화된 질

문을 사용하면, 면접조사의 상황에 따라 질문의 순서나 내용을 유연하게 조정하여 참여자로부터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면접조사의 질문은 <표 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특성’, ‘피해지원의 한계’, ‘지역적 특성’, ‘디지털성범죄 특화 상담소의 필요성’, ‘필요한 교육 및 지원’으로 구성하였다.

〈표 3〉 반구조화된 질문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주로 어떠한 어려움을 호소하나요?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원하는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피해지원의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나요?
지역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지원 과정에서 고려하는 지역적 특성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디지털성범죄 특화 상담소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성범죄 특화 상담소는 어떠한 기능을 수행해야 할까요?
필요한 교육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이나 지원은 무엇이 있나요?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피해지원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지역적 특성 등을 탐색하기 위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근거이론에 바탕을 둔 주제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Braun & Clarke, 2006). 주제 분석 방법은 단일 사건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인식에서 주제를 도출하는 질적 분석 방법이다(김선미, 안희란, 2016; 김진욱, 권진, 2015; Strauss & Corbin, 1998). 자료를 반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여러 가지 주제를 식별하고, 각 주제가 가지는 구체적인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이정숙, 신현주, 2023). 주제 식별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접의 녹취파일을 전사하였다.

주제 분석은 Braun과 Clark(2006)가 제시한 6가지 단계로 진행하였다. 1단계에서는 녹취록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자료의 내용을 파악하였다. 2단계에서는 각 자료에서 주제를 요약하여 코딩하였고, 3단계에서는 코딩한 주제를 원자료와 비교하면서 범주를 생성하였다. 4단계에서는 각 주제와 범주를 정교하게 보완 및 수정하였으며, 5단계에서는 이들을 명명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주제와 범주가 각 사례를 포괄하는지 검토한 후, 적절성을 갖춘 주제와 범주를 최종적으로 도출하였다.

IV. 분석결과

강원특별자치도에 위치한 여성폭력 대응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경험을 분석한 결과는 피해자의 특성,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의 한계,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성,

디지털성범죄 특화 상담소에 기대하는 역할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특성

면접 참여자들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온라인에서 자신의 영상물이 퍼져나가는 것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삭제지원과 이들의 일상 회복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높은 유포 불안’과 ‘삭제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음’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특성의 하위범주로 설정하였다.

1) 높은 유포 불안

여성폭력 대응 기관 종사자들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영상물 유포에 대한 불안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특정 행위를 강요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영상물을 지인에게 퍼뜨리겠다고 위협하며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피해자들은 자기 모습이 담긴 촬영물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거나 인터넷을 통해 퍼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면접 참여자들은 유포 불안이 피해자의 회복을 막는 요인이 된다고 강조하였다.

“저는 남자친구가 (이전에 찍은) 동영상을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해요.” 이렇게 전화가 오는 게 있거든요.” (면접 참여자 4)

한편, 딥페이크 기술로 자기 얼굴이 합성된 영상물이 제작되었음을 친구를 통해 알게 되었을 때 피해자는 큰 불쾌감을 느꼈으며, 유포 가능성에 대하여 심리적 고통을 받았다. 면접 참여자 8은 같은 학과의 남학생이 자기 얼굴을 합성하여 성적인 영상물을 제작한 사실을 듣자마자 피해자가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학교 대신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피해자가 유포 가능성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준다.

“(피해자는) 자기 얼굴을 딥페이크했다는 자체도 기분이 나쁘지만, 유포하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니까 친구랑 둘이 의논해서 학교에 신고하지 않고 먼저 경찰서를 간 거예요.” (면접 참여자 8)

2) 삭제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음

피해 영상물이 유포되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은 자신의 사회적 평가가 나빠질 것을 걱정하여 외부와 접촉을 줄였다. 11명의 면접 참여자 중 4명은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이 삭제지원이라고 강조하였다. 면접 참여자 6은 피해자들이 영상물의 유포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검색하고, 조회함에 따라 게시물의 조회 수가 높아지고 해당 영상물이 인기 게시물로 분류되어 빠르게 퍼져 나갔다고 지적하였다.

"(피해자들이) 유포 불안이 있어서 영상물을 계속 검색하면 조회 수가 올라가게 되고, 자꾸 조회하면 핫한 동영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면접 참여자 6)

피해자들은 영상물 유포로 인하여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므로 이들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삭제지원이 필수적이지만, 유포된 피해 영상물의 완전한 삭제는 실현되기 어렵다. 해외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물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국제 공조가 필요한데, 삭제를 요청하여도 이에 응하지 않는 사이트들이 많고, 영상물을 삭제하더라도 재유포될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 영상물의 재유포는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인 트라우마를 초래한다. 면접 참여자들은 피해자가 '내가 죽어도 영상은 남는다.'며 절망감을 드러냈다고 언급하였다. 피해자의 유포 불안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삶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피해 영상물을 삭제하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진짜 피해자들은 삭제가 진짜 1순위인데, 그것만 해주면 모든 인생이 새로운데, 그게 안 되니까..." (면접 참여자 2)

"내가 죽어도 영상은 남잖아요.'가 피해자의 기본 마인드이거든요. 내가 사라져도 저 영상은 살아남고, 누군가는 그것을 보고 있다는 거죠. (중략) 한 달 있다가 그게 또 나타나고 다 지웠다고 생각했는데, 또 나타나고... 그런 경우들 때문에 피해자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사실이에요." (면접 참여자 3)

"삭제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 지울 수 없는 게 현실이고, 그게 6개월이든 1년이든 또다시 떠돌아다닐 수 있는 문제들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삭제가 아예 어려웠다는 분도 계셨어요." (면접 참여자 9)

2.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의 한계

1) 유관기관 연계 체계의 구조적 문제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을 위하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찰청, 교육청, 병원 등과 협업은 필수적이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치료, 상담, 채증, 수사 등 지원을 하나의 기관에서 온전하게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업하여 삭제지원을 제공하고, 경찰청 사이버수사팀과 함께 수사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은 연계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저희는 긴급하게 위기 개입 상담을 하고, 그런 다음 이 내담자한테 정말 필요한 적재적소의 기관에 연결하는데, 가장 많이 하는 데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고, 만약에 수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사이버수사팀으로 연결하죠." (면접 참여자 4)

“삭제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서울에 있는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에 연계 의뢰를 하고, 법률 지원과 관련해서 변호사님의 조력이 필요할 때는 무료 법률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면접 참여자 5)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시 유관기관 간 연계가 필수적이지만, 면접 참여자들은 연계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연계 체계에서 드러나는 한계는 피해지원의 효율성 저하로 이어진다. 가령, 피해 영상물이 해외 사이트를 통해 퍼졌을 때 삭제지원을 위한 국제 공조가 필요한데, 국제적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삭제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국제공조가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 삭제지원 인력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면접 참여자 2)

다음으로 현장 전문가들은 디지털성범죄 유형에 따라 경찰청 내 담당 부서가 달라져 신속한 피해지원이 어려웠다고 지적하였다. 불법 촬영은 여성청소년과, 유포는 사이버수사팀, 유포 협박은 형사팀으로 분리됨에 따라 면접 참여자들은 피해자와 함께 여러 부서의 경찰관들을 접촉하였고, 그때마다 피해자는 피해 상황을 반복 진술하며 피로감을 느꼈다고 언급하였다.

“불법 촬영은 여성 청소년과, 유포는 사이버수사팀, 그리고 성범죄가 아닌 유포 협박은 형사팀 이러니까.... (수사지원하기) 어려웠어요.” (면접 참여자 9)

“여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여성 청소년 수사팀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수사관들은 가정폭력, 성폭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이버수사대는 디지털성범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이버에서 벌어지는 다른 범죄도 다 같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디지털성범죄에) 특화되어 있다고 얘기하기 어렵죠.” (면접 참여자 5)

2) 디지털성범죄 대응 경험 및 전문성 부족

면접조사가 이루어졌던 2024년에는 강원특별자치도에 디지털성범죄 통합 상담소가 부재하였으므로 여성폭력 대응 기관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였다. 면접 참여자들은 디지털 기술과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다. 이들이 디지털성범죄 대응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한 이유는 세대 간 디지털 기기에 관한 정보 격차, 교육의 한계, 실전 경험 부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상담자와 내담자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 경험에 차이가 있었다. 면접 참여자 3은 40~50대 상담자와 20대 내담자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방식이 달라 상담자가 내담자의 경험을 공감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언급하였다.

“피해지원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세계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20대와 지금의 40~50대가 생각하는 디지털 세계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피해자가 이야기하는 걸 40~50대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상담에 녹여내서 이 사람(내담자)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잘 꼬집어낼 수 있는가를 봤을 때 분명히 차이가 있죠.” (면접 참여자 3)

둘째, 교육을 통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이론을 학습하더라도 상담에서 이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웹하드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의 작동 원리나 피해자와 가해자가 대화를 나누는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피해자가 처한 문제를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은 상담자의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내담자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피해지원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상담하기 위해 저희 선생님도 공부하시는데 (이제) 뭔지도 모르겠고, 이해도 안 되시는 거야.. 너무 어려워.. ‘웹하드가 뭐야?’ 이러면서 그걸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면접 참여자 11)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상당수의 (상담원들) 연령대가 아주 젊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디지털성범죄가 발생하는 구조나 시스템에 대해서 사실 잘 몰라요.” (면접 참여자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얘기하는 걸 우리가 못 알아들으면... 그분들이 저희를 신뢰하고 상담을 의뢰하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상담원들이) 어려워합니다.” (면접 참여자 5)

셋째, 여성폭력 피해지원 기관 종사자가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한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 피해자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어렵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경험은 피해자의 복합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가정폭력 혹은 성폭력, 성매매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여성폭력 대응 기관 종사자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한 경험이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 면접 참여자 7은 기관 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상담원이 부재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언급하였다.

“우리가 많이 내담자를 접해야 전문성을 늘릴 수 있는데, 일단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실전 (경험)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디지털성범죄에 관하여) 실전 경험을 쌓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그런 상담은 어려워할 수밖에 없죠. 배웠던 걸 토대로 케이스마다 새롭게 접근해야 하니 장기 상담으로 끌고 가기가 좀 어려운 게 있어요.” (면접 참여자 7)

3.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성

1) 물리적 거리로 인한 서비스 접근성 저하

강원특별자치도의 면적은 약 16,830km²로, 경상북도와 전라남도 다음으로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넓다. 넓은 지리적 특성은 피해자가 주기적으로 기관을 방문하거나, 기관 종사자가 피해자를 찾아가는 데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소모하게 만든다. 심층면접 참여자 11명 중 절반이 넓은 지역에 분포하는 피해자를 지원하기 어려웠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평창에는 여성폭력 피해지원 기관이 없는데, 의료시설, 상담소, 보호시설 등이 부족한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데 제약이 많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오전 1시 고성에 사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여성긴급전화1366에 긴급보호를 요청할 경우, 물리적 거리로 인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여성긴급전화 1366이 위치한 춘천에서 먼 거리에 사는 피해자에게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점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지원체계의 한계에 해당한다.

도내 거점지역인 춘천, 원주, 강릉에는 여성긴급전화1366, 해바라기센터,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성매매 상담소 등 다양한 피해지원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세 지역에 있는 피해지원 기관들이 인근지역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응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관련 기관이 부재한 지역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긴급보호나 지속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전히 상담소가 없는 곳도 있고, (범죄가) 발생했을 때 긴급히 구조해야 되지만 그 구조의 체계가 아직 덜 형성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면접 참여자 2)

“인프라 없는 지역, 저희가 증점적으로 가는 데는 인제, 평창, 고성, 양구, 화천이죠. 거기는 상담소가 없으니까” (면접 참여자 4)

“여기까지 오시기도 힘들고, 저희가 아동, 청소년, 장애인은 동행 지원도 해요. 차량으로 피해자 모시고 와서 여기서 치료도 하고 모두 다 해요. 하지만 그 이외의 사람들은 안 되잖아요. 왕복 2시간 이상 걸리고 하면 여기까지 (피해자가) 오기 힘들어요.” (면접 참여자 1)

면접 참여자 11은 시내에서 외곽 지역으로 이동하는 데 왕복 3시간이 걸리고, 대중교통이 매우 제한적으로 운행되어 피해자가 기관에 방문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넓은 면적, 지역별 피해지원의 격차, 제한적인 교통수단으로 인한 기관 접근성 저하는 피해지원에 대한 종사자의 업무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삼척은 지역이 되게 넓어요. 삼척 시내에서 가구까지 가려면 1시간 반 걸리거든요. 왕복 3시간

방문 상담 갔다 오면 하루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방문 상담은 되게 마음먹고 가야 되거든요. 그분들도 (상담받으러) 나오기 힘들고 외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버스가 하루에 2~3대밖에 없어요.” (면접 참여자 11)

“여기 끝에서부터 끝까지 거의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이고, 또 시골은 읍이 이렇게 뜨문뜨문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교통이 불편하고, 의료도 안 돼요.” (면접 참여자 10)

2) 지역 내 익명성 부족

강원특별자치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사회 내 익명성 부족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기관의 방문을 꺼리는 경향을 보였다. 가령, 소도시에 오랜 기간 거주하며 지역 주민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자신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 것을 우려하여 근처에 피해지원 기관이 있더라도 쉽게 방문하지 못한다. ‘좁은 지역 네트워크’ 특성상 피해 영상물이 유포되거나, 유포 협박을 받고 있다는 등 소문이 나면, 자신의 명예와 사회적 관계에 악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는 지역 내 위치한 기관 대신 다른 지역에 있는 기관에서 지원받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평창에는 또 상담소가 없어요. 없어서 오시긴 했는데 자기 지역에서 지원받는 거를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좁은 지역이면 소문 때문에...” (면접 참여자 10)

익명성 보장을 위해 피해자가 타지역 기관에서 지원받기를 선택하더라도 피해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여성폭력 대응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 절차상 피해자의 요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다. 면접 참여자들은 여성폭력 대응 기관이 특정 시 혹은 군으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는 경우 피해지원을 제공하는 지역이 제한되므로 타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지원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지원 체계의 한계는 피해지원에 대하여 피해자가 느끼는 심리적 거리감을 높이고, 기관 접근성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지역 내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피해자가 지원받기를 거부하면 피해 영상물 확산 방지를 위한 삭제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성폭력 피해자였는데 평창군에서 정선에 신고를 하니까 결국엔 정선경찰서에서 평창경찰서로 송치하더라고요. 결국엔 자기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근데 사실 소문나는 게 두려워서 좁 그런 거(지역 내에서 지원받는 것)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면접 참여자 10)

4. 디지털성범죄 특화 상담소에 기대하는 역할

2025년부터 강원특별자치도에 디지털성범죄 특화 상담소가 운영되면, 그동안 여성폭력 대응 기관에서 해왔던 디지털성범죄 지원 업무를 전문 상담원이 담당하고, 특화 상담소가 지역사회 내

에서 중점기관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화 상담소가 도내에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수행해야 하는 역할은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영서와 영동 지역을 아우르는 포괄적 지원

강원특별자치도는 영서와 영동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디지털성범죄 특화 상담소가 위치한 원주는 영서 지역에 해당하는데, 면접 참여자들은 특화 상담소가 중점기관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두 지역의 피해자에게 균등한 피해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디지털성범죄 특화 상담소에는 2명의 전문 상담원이 배치되는데, 이 인력으로 영동과 영서 지역의 피해자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면접 참여자들은 우려를 표하였다. 면접 참여자 1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넓은 지리적 조건을 고려하면, 2명의 전문 상담원이 영서와 영동 지역을 담당하기보다는 3명의 전문 상담원이 원주, 춘천, 강릉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강릉에 통합 상담소가 하나 있어요. 통합 상담소가 (디지털성범죄를 지원)한다고 그러면, 인력을 3명 지원해서 춘천에 1명... (강릉 1명, 원주 1명 배정하고) 이분들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상담과 모든 것을 한다고 하는 게 맞는 거지.. 2명으로 어떻게... (영서와 영동 지역의 디지털성범죄를 모두 대응하겠어요.)” (면접 참여자 1)

2) 삭제 요청 및 모니터링 활성화

면접 참여자들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화 상담소가 삭제지원과 모니터링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런데 특화 상담소는 직접적으로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을 제공하지 않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지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특화 상담소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 영상물 삭제를 요청하면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상 영상물이 유포되면 삭제 후에도 재유포될 가능성이 크므로 면접 참여자들은 특화 상담소의 전문 상담원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피해자에게 필요한 삭제지원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공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선제적 검색을 통해서 어떤 플랫폼에서 그런 것(영상 유포)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면 빨리 그거를 고소 방통위를 열어서 빨리 삭제하는... 그런 기능들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면접 참여자 2)

“디성(디지털성범죄)이라고 하면 삭제가 제일 중요한 메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면접 참여자 3)

3) 조력자로서 역할 수행

피해 영상물의 유포와 재유포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은 오랜 기간 지속된다. 면접 참여자들은 디지털성범죄 특화 상담소가 지역사회 내에서 피해자에게 장기간 밀착지원을 제공하는 조력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피해자는 삭제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지만, 동시에 피해 영상물의 완벽한 삭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이에 특화 상담소의 전문 상담원은 피해자가 불안감을 극복하고 일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곁에서 지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상담원이) 옆에서 함께 같은 방향을 보면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에 조금 의지가 되기도 하고, 힘을 내는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중략)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완벽하게 삭제할 수 있는 부분이 실은 어렵고, 그래서 이분(피해자)을 두려하면서 ‘같이 싸우자.’라는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면접 참여자 9)

“가장 중요한 것은 옆에 멘토가 있어주는 것.. 전화하든 만나든 뭔가 나의 욕구를 함께 해주고 동행해 줄 수 있는 멘토가 있다는 그 부분이 피해지원의 제일 큰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면접 참여자 8)

4) 365일 24시간 상담 및 핫라인 운영

디지털성범죄 특화 상담소에 기대하는 역할에 대하여 면접 참여자들은 피해자가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구체적으로 24시간 핫라인과 온라인 상담 시스템 구축을 제시하였다. 면접 참여자 6과 7은 상담 접수를 위한 수단이 아닌, 응급 대응 및 법적 지원이 바로 제공될 수 있는 체계로서 핫라인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특화 상담소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언제든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항상 언제든지 누구라도 전화하면 전화를 받고 할 수 있는... 대면 상담이 아니더라도 사이트나 내용들을 보고 바로바로 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중략) 핫라인과 24시간 체계가 구축되었으면 좋겠다.” (면접 참여자 6)

“피해자들이 좀 신속하게 도움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24시간 핫라인 구축은 반드시 좀 필요한 게 아닌가...” (면접 참여자 7)

5) 지역 내 예방 및 인식 개선 교육

면접 참여자들은 특화 상담소가 도내 디지털성범죄 중점기관으로서 예방 및 인식 개선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교육은 장기적으로 디지털성범죄 발생을 줄이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면접 참여자 7은 청소년,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화 상담소가 지역 내 디지털성범죄에 관련된 예방 교육이나 인식 개선 교육 이런 것들도 좀 담당해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면접 참여자 7)

예방교육은 디지털성범죄의 원인과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실질적으로 행동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또한, 범죄의 피해를 줄이는 데서 더 나아가, 디지털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사회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설정한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고요.” (면접 참여자 4)

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디지털성범죄의 대응체계를 제시하는 것이다. 조사가 시행되었던 2024년까지 도내에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 부재하였으므로 여성폭력 대응 기관의 종사자 11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하였으며, 주제분석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 내용을 분석한 결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특성, 피해지원의 한계,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성, 디지털성범죄 특화 상담소에 바라는 역할과 같이 4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면접에 참여한 현장 전문가들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유포 불안이 높고, 삭제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피해지원 과정에서 현장 전문가가 경험한 한계는 연계 체계의 구조적 문제, 디지털성범죄 대응 경험 및 전문성의 부족이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성으로 물리적 거리로 인한 서비스 접근성 저하와 좁은 지역 내 피해자의 익명성 부족이 제시되었다. 또한, 도내 여성폭력 대응 기관은 춘천, 원주, 강릉을 중심으로 분포하는데, 일부 지역에 관련 기관이 부재함에 따라 지역별 피해지원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 참여자들은 강원특별자치도에 설립되는 디지털성범죄 특화 상담소에 바라는 역할로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영서와 영동 지역을 아우르는 포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며, 두 번째는 적극적인 삭제지원과 예방 활동을 시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이 장기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네 번째는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365일 24시간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섯 번째는 예방 및 인식 개선 교육

을 시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가 가지는 정책적 함의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넓은 면적과 지역별 지원 체계의 격차를 고려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을 위한 중앙-지역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025년 원주에 설립되는 디지털성범죄 특화 상담소가 중앙 기관에 해당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 기관에 해당하는 여성폭력 대응 기관, 경찰청, 교육청, 병원 등과 연계 체계를 마련한다면, 도내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디지털성범죄 특화 상담소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데, 중앙과 지역 기관과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면 운영시간 외에 피해자의 상담을 접수하거나, 초기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령,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평일 오전 8시~오후 10시, 주말 및 공휴일에는 오전 9시~오후 6시에 운영하므로 이 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특화 상담소의 운영시간 외에 피해자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넓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원주에 위치한 디지털성범죄 특화 상담소 1개소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가령, 고성군청 부근에서 디지털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특화 상담소가 위치한 원주에서 방문 상담을 가는데 차로 2시간 30분이 소요된다. 먼 거리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상담을 받기 위하여 디지털성범죄 특화 상담소에 방문하는 것은 쉽지 않고, 전문 상담원이 매번 고성까지 방문 상담을 제공하는 것 역시 어렵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면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을 제공하는데 지역 유관과의 연계 체계 구축은 필수적이다.

각 지역에 있는 여성폭력 대응 기관, 경찰서, 학교, 병원과 연계하면 피해자에게 밀착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도내 협업 가능한 여성폭력 대응 기관으로는 여성긴급전화1366 1개소, 가정폭력·성폭력 통합 상담소 7개소, 가정폭력 상담소 4개소, 성폭력 상담소 3개소, 성매매 상담소 1개소, 해바라기센터 3개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5개소,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1개소,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1개소, 이주여성 상담소 1개소,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지소 15개소가 있다. 이와 더불어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권익증진 상담소·시설협의회(상시협)는 도내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성폭력 대응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평창)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족센터, 경찰 등 기관과의 긴밀한 연계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이 외에 디지털성범죄 가해자 처벌을 위하여 경찰청과의 연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현장 전문가들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와 함께 경찰청에 방문하였을 때, 수사기관 내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부재하여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영상물이 불법 촬영물인지, 피해 영상물이 유포되었는지 등에 따라 담당 부서가 달라졌다고 지적하였다. 특화 상담소가 지역 내에서 중점기관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경찰청과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에 관한 협업 매뉴얼 제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수사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담방식의 다양화를 제언하고자 한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현장 전문가들은 영동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이 원주에 위치한 디지털성범죄 특화 상담소에 지속적으로 방문하기 어려울 거라고 우려하였다.

디지털성범죄 특화 상담소의 2명의 전문 상담원이 피해 영상물 모니터링, 삭제지원 연계, 수사 및 법률지원 연계, 교육 및 홍보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먼 거리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을 찾아가 정기적으로 상담해야 한다면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비대면 상담은 지역적 특성에서 비롯된 문제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상담원이 정기적으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거나 피해자가 여성폭력 대응 기관에 방문하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볼 경우, 피해 사실이 소문날 수 있으므로 소도시에 거주하는 피해자는 대면 상담을 거부하는 경향을 보인다. 대면 상담의 방식을 비대면 상담으로 전환하고, 전화 혹은 화상회의 프로그램, 카카오톡 등을 활용하면 피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물리적 거리로 인한 제약 없이 정기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 피해자가 얼굴 공개 혹은 이름, 전화번호 등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화상회의 프로그램에서 카메라를 끄고 마이크 기능만 사용하거나 상담시 가명을 이용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디지털성범죄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예방 및 피해 대응에 관한 교육이 필수적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어떠한 행위가 디지털성범죄에 해당하는지, 디지털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한다. 교육적 대응은 관련 연구들에서도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해결책으로 강조되었다(Jun, W. C., 2023).

이와 같은 정책적 함의와 더불어 본 연구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에 대한 이론 확장에 기여하였다고 여겨진다. 디지털성범죄의 피해지원 수준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2024년까지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전문 기관이 부재하였던 강원특별자치도는 그동안 디지털성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도내 여성폭력 대응 기관 종사자를 중심으로 심층 면접을 시행하여 디지털성범죄 지원 경험을 탐구한 본 연구는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지역적 특성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지원 과정에서 종사자의 소진 경험(이정숙, 신현주, 2023)이나 어려움(박찬미, 2021; 전해경, 2023; 최혜정, 2024)을 조사하였으나, 지역적 특성은 주목하지 않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피해지원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필요성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유관기관과의 연계, 상담지원 방식 등 디지털성범죄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은 본 연구가 가지는 이론적 함의에 해당한다.

정책적·이론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피해지원 경험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연구의 결과가 타지역 현장 전문가의 경험과는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모형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의 공백을 메우고, 대응전략을 마련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는 부합하지만,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둘째, 본 연구의 조사가 이루어졌던 2024년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디지털성범죄 특화 상담소와 전문 상담원이 부재하였으므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의 어려움을 여성폭력 관련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할 수밖에 없었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은 여성폭력 관련 기관 종사자들이 피해지원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이 분야의 전문 상담원이 경험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 즉, 연구의 결과를 디지털성범죄 전문 상담원이 경험하는 어려움이라고 이해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본 연구

에서 지적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후속연구에서 디지털성범죄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피해지원 경험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참고문헌

- 강은영. (2020). 「디지털성범죄의 현황과 특성」. 통계청 통계개발원.
- 권미경. (2018).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 「이화젠더법학」, 10(3): 39-76.
- 김경희·김수아·김은경. (2020). 중·고등학생의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다면적 이해와 정책 시사점. 「이화젠더법학」, 12(2): 257-289.
- 김미선. (2020). 디지털 성범죄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중심으로. 「한국범죄정보연구」, 6(2): 1-17.
- 김선미·안희란. (2016). 육아휴직 경험이 있는 여성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경험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8(2): 63-94.
- 김소영. (2025. 2. 23). 길에서 눈 마주치면 ‘저 사람도…’ 피해자는 두렵다[N번방 너머의 이야기]. 동아일보(<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223/131081689/1>) 2025년 3월 10일 접속.
- 김진욱·권진. (2015). 아버지들의 육아휴직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사회정책」, 22(3): 265-302.
- 김호겸. (2023).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 및 피해자 지원 방안. 「법과 정책연구」, 23(4): 83-114.
- 김희정·박광민. (2020).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유형·실태 및 개선방안. 「성균관법학」, 32(4): 237-276.
- 남재성. (2019).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태도와 정책적 함의. 「한국중독범죄학회보」, 9(3): 45-68.
- 박미란·김혜원·조혜영. (2023).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의 현장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여성연구」, 117(2): 63-97.
- 박은하. (2023). 디지털성범죄 가해청소년의범죄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교정담론」, 17(1): 185-223.
- 박찬미. (202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피해지원자 심층 면접을 기반으로. 「이화젠더법학」, 13(3): 31-63.
- 선은애. (2020). 디지털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제도적 연구. 「토지공법연구」, 92: 319-335.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 2024. 10. 16, 법률 제20459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 2024. 10. 16, 법률 제20461호).
- 송사리·김지연. (2022). 「강원도 젠더폭력 실태조사」.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 신보라. (2024). 「5대 폭력으로부터 안심 사회 구현을 위한 역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심선희·김숙이·백소운·최금순. (2023).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현황 및 과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 2024. 10. 16, 법률 제20462호).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여성폭력방지법). (개정 2024. 3. 26, 법률 제20419호).
- 오삼광. (2023).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적 검토. *한양법학*, 34(1), 109-129.
- 이연화·양금선. (2024). 「제주지역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의 실태와 피해자지원방안 연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이정숙·신현주.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상담자의 소진 경험. 「*한국범죄심리연구*」, 19(2): 125-142.
- 이종현·강동욱. (2021). 디지털성범죄의 실태와 대책 방안-경찰실무를 중심으로. 「*한양법학*」, 32(3): 47-74.
- 이혜정·김수아·박진아. (2022). 청소년의 디지털 성폭력 피해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디지털 세계의 폭력적 젠더 질서 속에서 살아남기. 「*한국여성학*」, 38(3): 73-108.
- 전혜경. (2023).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실무자 관점에서 본 청소년의 피해경험-텔레그램과 디스코드를 중심으로. 「*안전문화연구*」, 21: 47-64.
- 정다운·이은지. (2020). 「부산지역 디지털성범죄 인식조사 및 대응방안」. (재)부산여성가족개발원.
- 정도희. (2021).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방안. 「*소년보호연구*」, 34(2): 207-22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 2024. 2. 13, 법률 제20260호).
- 정완. (2021). 디지털 성범죄의 규제에 관한 고찰. 「*경희법학*」, 56(2): 65-97.
- 정혜원·강지현·최금순. (2024).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체계 구축 방안 연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최동순. (2025. 2. 12). 10대 피해자만 159명... 성착취 '목사방' 우두머리 김녹완 구속기소. 한국일보(<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48631?sid=102>) 2025년 3월 2일 접속.
- 최용성·곽대훈. (2020). 성폭력처벌법 제 14 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성범죄의 합리적 대응방안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22(2): 221-248.
- 최혜정. (2024). 현장 전문가들이 인식한 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학교사회복지*」, 65: 85-103.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4).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한성훈. (2020).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31(4): 55-79.
- 형법. (개정 2023. 8. 8, 법률 제19582호).
- 홍남희. (2018). 디지털 성폭력의 '불법화' 과정에 대한 연구. 미디어, 「*젠더 & 문화*」, 33(2): 203-246.
- Braun, V., & Clarke, V.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77-101.
- Jun, W. C. (2023). A study on the analysis of and educational solution for digital sex crimes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20(3): 1-13.
- Rai, N., & Thapa, B. (2015). A study on purposive sampling method in research. Kathmandu:

Kathmandu School of Law, 5(1): 8-15.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CA: Sage Publication.

전예지(全禮智):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서 박사학위(비동거 부모에 대한 성인 자녀의 소득 이전 결정요인: 부모 부양의 동기를 중심으로, 2024.2.23)를 취득하였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며,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강사(2024.1.~2024.6.)를 역임하였다. 관심 분야는 여성복지, 가족복지, 노인복지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중·고령자가 경험하는 불안정노동은 성별에 따라 분절적으로 나타나는가?(2022)”, “가족관계행렬을 활용한 손자녀의 친족 네트워크 추정(2024)”, “성인자녀-부모 가구 간 자원 공유정도 측정을 위한 지수 개발 - EFA와 CFA의 활용(2024)”이 있다.(yeji1618@korea.kr)

〈논문접수일: 2025. 3. 16 / 심사개시일: 2025. 4. 11 / 심사완료일: 2025. 4. 24〉

Abstract

Establishing a Digital Sexual Crime Response System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A Case Study of Gangwon State

Jeon, Yeji

Digital sexual crimes inflict long-term psychological and social distress on victims due to the challenges of completely removing disseminated materials. This study explores the establishment of a digital sexual crime response system that accounts for regional characteristics, with a particular focus on Gangwon State in Korea. To this e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1 professionals working in local agencies that respond to gender-based violence. The analysis revealed that victims exhibited high levels of anxiety regarding dissemination and demonstrated an urgent need for effective content removal support. Additionally, interview participants reported difficulties in providing victim support due to insufficient inter-agency coordination and a lack of specialized expertise. Furthermore, two critical regional challenges in victim support were identified: (1) limited accessibility to services due to the vast geographical expanse, and (2) difficulties in maintaining victim anonymity in small communitie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the establishment of a robust central-local agency network, diversification of counseling methods, and enhancement of education programs on prevention and victim response to develop an effective digital sexual crime response system in Gangwon State.

Key Words: digital sexual crime response system, regional characteristics, gangwon state, center for digital sexual crime response, content removal support